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- 976호

「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」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」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2조의4제3항에 위임조항이 신설(대통령령 제 35947호, '26. 6. 23. 개정·시행)됨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 선정 및 소명 절차, 공표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공정건설지원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
- 전자우편 : parkmy2@korea.kr
- 팩 스 : 044-201-5548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 > 정책자료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·행정예고란)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(전화 044-201-351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